

충북인재양성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제안연월일 : 2007. 12. 3 .

제안자 : 행정자치위원장

수정이유

충북인재양성재단 운영의 투명성 확보와 도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하여 재단은 사업실적 및 결산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도민에 공개하도록 함

수정주요내용

○ 안 12조(결산서 제출)의 “재단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재단은 제1항의 사업실적 및 결산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도민에게 공개한다.”는 제2항을 신설함. (안 제12조의 제2항)

충북인재양성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조례안

충북인재양성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안 제12조 중 조 명칭 “(결산서 제출)”을 “(결산서 제출 등)”으로 하고, 같은 조 본문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② 재단은 제1항의 사업실적 및 결산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도민에게 공개 한다.

수 정 안 대 비 표

제 정 안	수 정 안
제12조(결산서 제출) 재단은 매 회계연도의 사업 실적 및 결산서를 작성하여 다음연도 2월말 까지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〈신설〉	제12조(결산서 제출 등) ① (제정안과 같음) ② 재단은 제1항의 사업실적 및 결산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도민에게 공개한다.